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이행의무 부과 등〉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이행의무 부과 등(안 제4조의2 신설 등) ...	3
2. 시행계획 승인취소 등 사유 하위법령에 위임(안 제11조)	14
3. 개정안 부칙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1. 12.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부지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승인한 시행계획과 달리 학급 축소 등 학교규모를 축소하거나, 교사동만 먼저 승인하고 체육관·급식실 등 부속시설은 추후 별도 심사하는 등 불완전한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학교법인 중 해당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승인받은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불완전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거나 매매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이행의 규범력과 사업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17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이행의무 부과 등(안 제4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승인받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변경승인 받은 시행계획(이하 “변경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시행계획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점검 의무가 부과되며(안 제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안 제4조의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의 이행 의무 등)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받은 자는 그 시행계획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이하 “변경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감독청은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3(시정명령) ① 감독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이행강제금) ① 감독청은 제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변경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행계획 및 변경시행계획의 내용,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감독청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감독청은 제4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

	<u>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u>⑦ 감독청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	--

나. 검토의견

1)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이행 의무 및 감독청의 확인·점검 의무 부과

-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²⁾.

1)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같이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 여건³⁾ 및 토지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확보 어려움⁴⁾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학교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밀학급 발생, 원거리 통학 등이 발생하여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짐.
-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감독청에게 시행계획 승인 취소,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이행의무 부과 및 감독청의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인바, 교육여건 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시정명령은 법률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영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하는 것인바⁶⁾, 법률에 학교시설사업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 이행 의무

3) 시행계획 승인은 받았지만, 사업 부지 내 개발제한 구역, 구거(溝渠) 등 부지 매입이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행 불가

4) 사업시행자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법인 등이 사유지 소유자의 변심(알박기, 가격폭등)으로 부지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법 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시행계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 및 학교법인 등이 학교시설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당연한 선행 조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감독청이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해야 한다는 선언적 제시는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임.

2) 시정명령

- 시정명령은 법 위반에 대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되기 전에 영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영업자에게 위법상태의 제거 등을 명하면 영업자에게는 시정의무가 부과되므로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⁷⁾.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미이행(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감독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⁸⁾.

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319

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318

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감독청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행의무 부과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시정명령은 “○○(행정기관)은 영업자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률상 기준을 미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바⁹⁾,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입법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시정명령은 침익적 행정행위로 그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공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의 개념은 내용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례 중에는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319

[입 법 례]

「산림보호법」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교육부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3) 이행강제금

- ☐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임.¹⁰⁾

- ☐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변경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행계획의 내용,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계획 이행의무 부과 - 시정명령 -

10)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바,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¹¹⁾.

□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¹²⁾,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¹³⁾, 이 경우 학교법인(사업시행자)의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되는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은 시정명령 등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¹⁴⁾, 개정안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기본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1조) 그 부과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서 관련 절차를 중복규정할 필요는 없고,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⁵⁾.

1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319

12) 교육부는 ①개발제한 구역, 구거(溝渠) 등 부지 매입이 법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토지 매입, ②사유지 소유자의 번심(알박기, 가격폭등)으로 부지 확보 지연, ③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경우 오히려 예산 낭비가 명백해 지는 상황 등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13) 개정안도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14)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420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개정안의 경우 제17조 제3항(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 통지), 제4항(금액 및 부과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이행강제금 부과), 제6항(시정명령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및 제7항(국세강제징수의 예 적용)의 경우 「행정기본법」 제31조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학교법인 등이 시행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률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 하기 보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청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 시도교육청 의견

- [일부수정] (충남)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로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및 기간 내 불 이행시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추가 규정 제시 필요
- [신중검토] (경기) 시행계획 실효성 강화 취지는 이해되나,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수단으로 인한 과잉규제, 분쟁발생, 전문인력 추가 필요,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신중검토] (경북) 법적 실효성은 확보하되 학교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공익성 침해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접근이 필요

2. 시행계획 승인취소 등 사유 하위법령에 위임(안 제11조)

가. 개정안의 요지

- 현행법은 감독청이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시행계획 <u>승인의</u>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 <u>및 변경시행계획 승인의</u> 취소 등)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학교시설사업을</u>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u>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가 ① 부정한 수단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②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취소,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부정한 수단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달리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감독청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며, 동 조항이 침익적 성격인 것을 고려한다면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유를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⁶⁾.
-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입법례의 경우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을 명시한 사례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중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먼저,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⁷⁾.
- ☐ 다음으로, 신법 시행 당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법에 대한 적용례를 두어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821

문 의 처
02)6788-5186